

자양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세칙

(광진구 자양2동) (시행일 : 2016.4.22.)

제정일: 2016.04.22.

개정일: 2017.03.29.

개정일: 2019.03.05.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의체는 “자양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본 협의체"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체는 민·관협력을 통해 저소득가정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발굴함으로써, 지역 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보장 기능 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 원

제3조(구성)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때 한쪽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2019.3.5.신설>
2. 위원은 제2조의 목적에 적합한 자로서 지역사회 주민서비스 자원을 제공하거나 발굴·연계가 가능한 자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자발적·실천적 의지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관계자, 주민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보유한 기관(종교계,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의 실무자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2019.3.5.개정>
3. 동장, 주민복지1·2팀장, 사회보장업무담당공무원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2019.3.5. 신설>

4. 동 직능단체(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체육회, 적십자봉사단, 자원봉사캠프, 자유총연맹회)의 장은 본 협의체 우선 위촉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능단체장이 위원 위촉을 사양할 경우 위촉을 제외할 수 있으며 직능단체 임원 또는 회원 중 1명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2019.3.5. 개정>

5. 동 협의체의 효과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분과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2019.3.5.개정>

가. 분과는 발굴돌봄분과, 나눔지원분과, 운영지원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9.3.5.개정>

1) 발굴돌봄분과: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굴, 위기가구 현장방문 및 실태파악, 이웃돌봄 프로그램 추진 등

2) 나눔지원분과: 지역자원 발굴 및 연계, 나눔이웃, 나눔가게 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 모금활동 등

3) 운영지원분과: 동 특화사업 기획 및 총괄, 주민대상 교육, 사업홍보, 협의체 운영 및 재정 마련방안 등

나.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동장이 정한다.<2019.3.5.신설>

제4조(권리와 의무) 위원은 본 세칙을 준수하고 협의체의 발전에 적극 기여해야 하며, 회의와 모임에 출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5조(임기)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2. 동직능단체장이 변경될 경우 신임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전 단체장을 맡았던 위원은 본인 동의를 얻어 해촉하거나 잔여임기동안 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019.3.5.개정>

또한, 전 단체장이 잔여 임기 후에도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할 의사가 있고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③에 규정한 사항을 충족할 경우 위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다.<2019.3.5.신설>

3.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가.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나.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 다. 동 협의체 운영취지 및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라. 사회복지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019.3.5.신설>
4. 위원의 해촉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2019.3.5.신설>

제3장 임 원

제6조(임원) 본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2019.3.5.개정>

1. 위원장: 2명(민·관 각 1명)
2. 부위원장: 1명(민간위원) <2019.3.5.개정>
3. 총무: 1명(민간위원) <2019.3.5.신설>
4. 간사: 2명(민·관 각1명) <2019.3.5. 개정>

제7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정기회의에서 선출하고 결원이 있을시 보강한다.<2019.3.5.개정>

1. 위원장은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동장과 위촉직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1명으로 한다.<2019.3.5.개정>
2.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이 추천하거나 위원 중 선출한다.<2019.3.5.개정>
3. 총무는 공동위원장이 추천하거나 위원 중 선출한다.<2019.3.5.신설>
4. 간사는 민관 각 1명을 공동위원장이 추천하거나 위원 중 선출한다.<2019.3.5.개정>

제8조(임원의 직무) 본 협의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본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직접사업비 등 재정을 관리한다.<2019.3.5.신설>
4.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안건 및 현황을 보고하고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 행정업무와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2019.3.5.개정>

제4장 회의 및 역할

제9조(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2019.3.5.개정>

1.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2019.3.5.개정>
2. 정기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9.3.5.개정>
3. 임시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9.3.5.개정>

제10조(역할) 본 협의체 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발굴과 육성
2.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예방적 복지 강화
3. 지역 공동 협력사업 추진 및 승인, 시행지원
4.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5. 따뜻한 겨울나기 일일찾집 행사는 동 주민자치위원회에 일임함

제5장 회의록

제11조(회의록 작성) 본 협의체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내용·안건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장 기 타

제12조(비밀준수 의무) 본 협의체 위원은 협의체 운영과정에서 알게 된 복지대상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의견의 청취) 본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운영세칙은 정기회에서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세칙 개정) 본 협의체의 운영세칙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운영세칙은 정기회의에서 가결한 날부터 시행한다.